

# 공용건축물(가조119안전센터) 증축 동의안

의안  
번호 2016-

제출일자 : 2016. 08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1. 제안사유

-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서 신규차량(물탱크) 배치를 위한 차고 진입(높이)공간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적재공간을 확보 위해 청사 증축에 대한 승낙 요청이 있어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증축을 승낙하기 위함

## 2. 가조119안전센터 운영현황

-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
-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 후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배치와 적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증축을 예정임
- 청사현황
  - 토지(소유:거창군) : 가조면 마상리 467-6, 전, 1,026㎡
  - 건물(소유:경남도) : 철근콘크리트조, 2층, 연면적 384.49㎡
- 운영현황
  - 관할지역 : 3개면(가조면, 가북면, 남하면)
  - 면 적 : 212km<sup>2</sup>(거창군 전체의 26.4%)

## 3. 증축규모

- 1층 차고 및 식당 증축 : 32.38㎡
- 차고 앞 바닥면 높임

4. 소요예산 : 금72,618천원(도비)

5. 추진일정

-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의회 동의 : '16. 9월
- 공사착공 및 준공 : '16. 10월 ~ 12월

6.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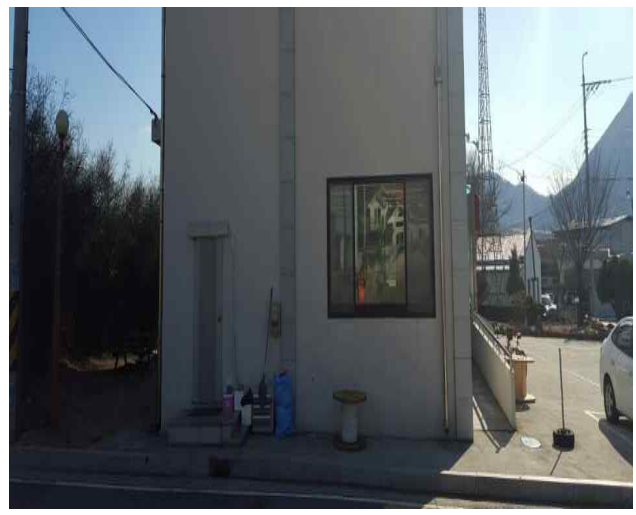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: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: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: 사용료의 감면

# 가조 119안전센터

## ■ 전 경



건물 정면



건물 우측



건물 좌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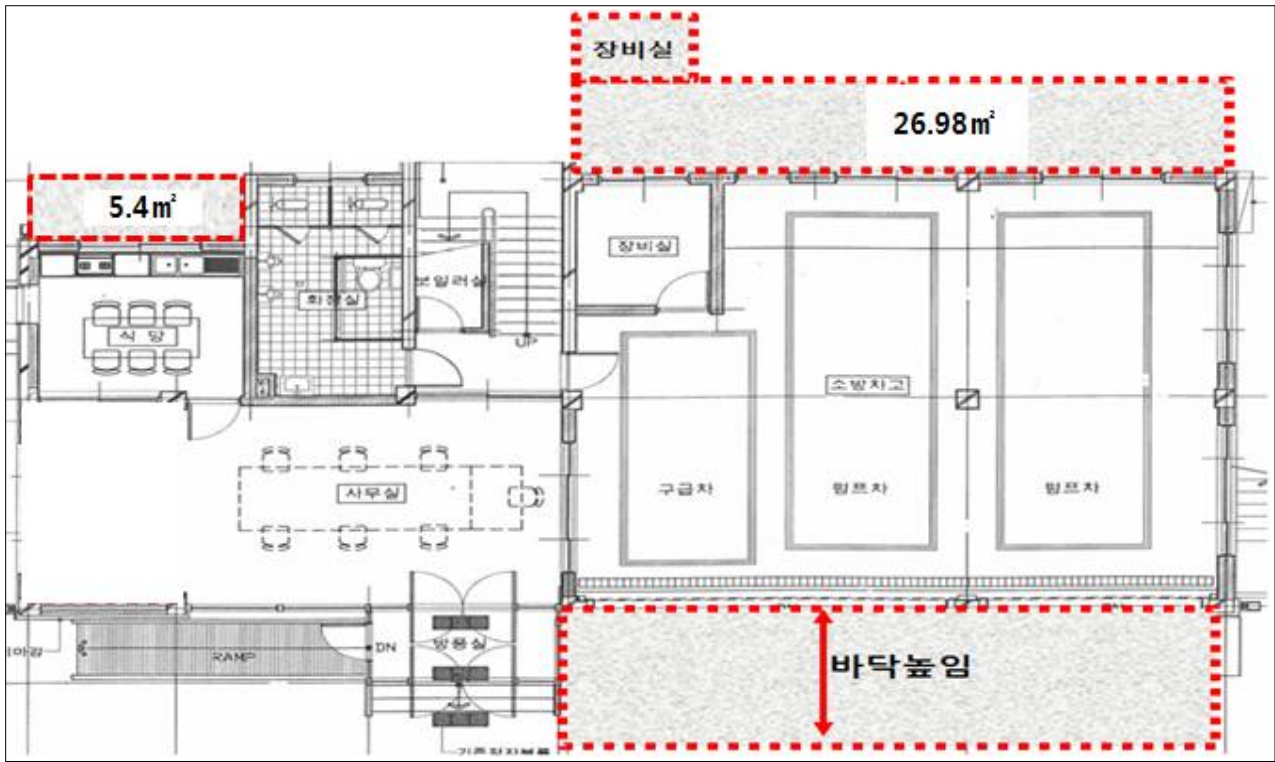


차고

## ■ 건물위치



■ 참고도면



# 관 련 법 령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- 2.
- 3.
- .
- .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 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